

2024년 보건관리 예산 편성으로 머리아프시다구요?

견적 문의 상시 OK!!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 ▶ 보건진단
- ▶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평가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 ▶ 국소배기장치 정밀진단
- ▶ EHS 컨설팅



대표전화 02-782-3380
전자우편 kohma@kohma.kr
홈페이지 www.kohma.kr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
KOREA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보건진단 안내

보건진단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에서 조사·평가하는 제도

보건진단 분류

-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 명령진단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밀폐공간, 질식, 직업병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 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보건진단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기타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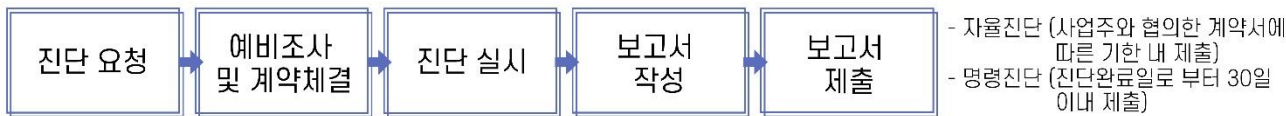
보건진단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보건진단 내용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허가 대상 유해물질,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진단 절차



고용노동부 업무위탁기관: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기관, 보건진단기관

(사)한국산업위생협회 TEL. 02)782-3380 E-mail. kohma@kohma.kr

사내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시 안전 및 보건평가 안내

○ 사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평가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01. 16.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장 내에서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독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9조 : 도급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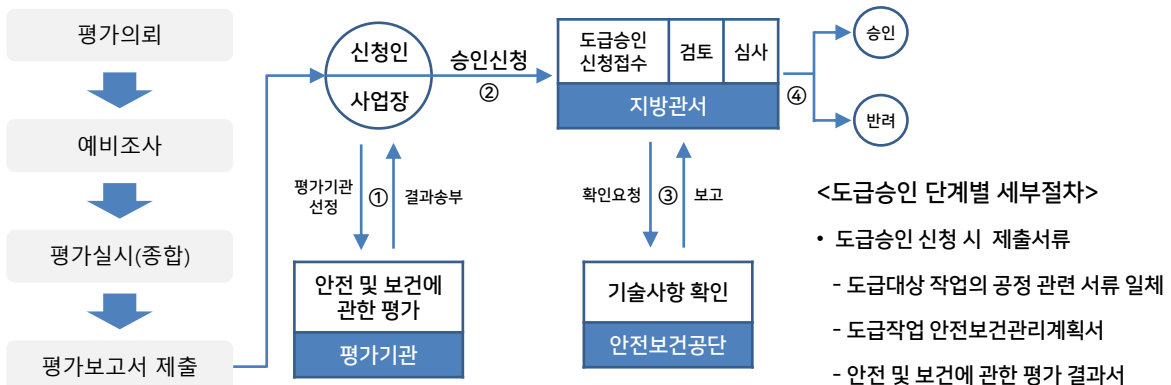
○ 유해·위험작업(도급승인) 안전·보건진단평가 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평가종류
도급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보건평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함(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	
중량비율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종합평가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평가내용(시행규칙 별표 12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평가 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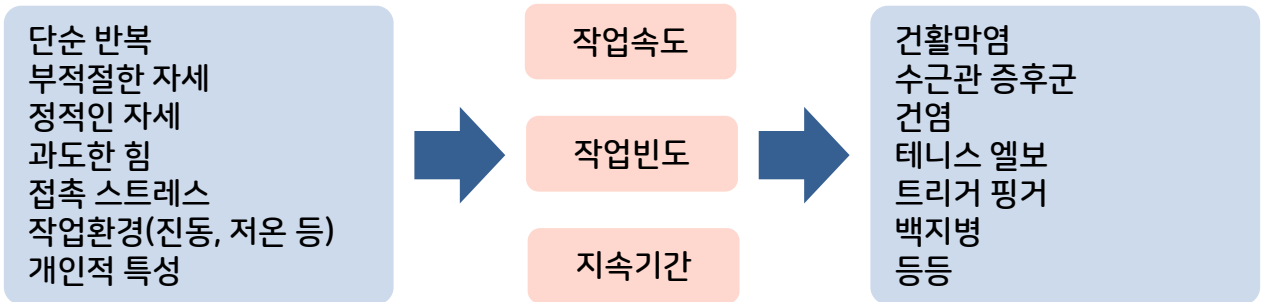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내

근골격계질환 정의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작업 중 우리 신체가 유해한 인자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면서 미세한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켜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근골격계 질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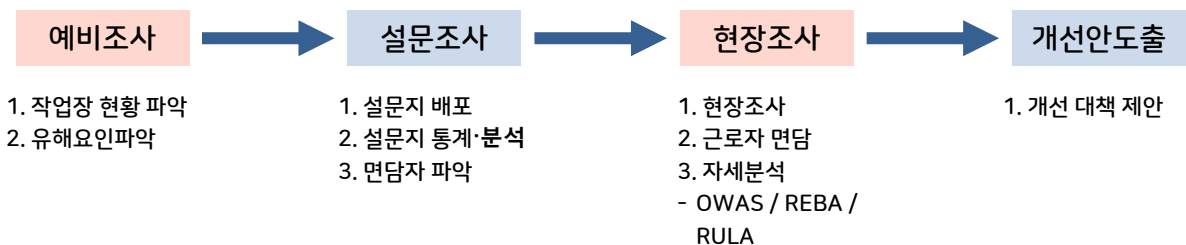
유해요인조사 목적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

유해요인조사 종류

- ✓ 최초 조사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 정기 조사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실시
- ✓ 수시 조사 :
 1.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절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

위험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병 유소견자, 구성 성분의 함유량, CMR 정보,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비산성, 휘발성 등을 입력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결정하여 자동으로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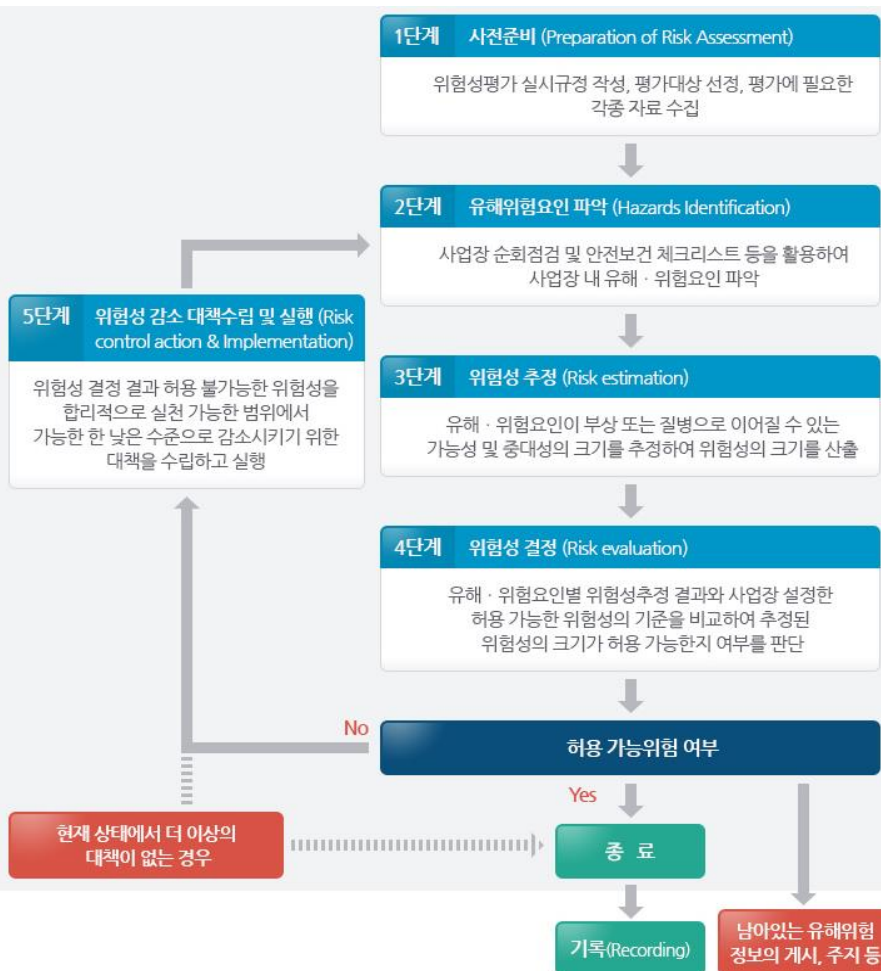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사단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 KOREA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고용노동부 업무위탁기관]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기관
보건진단기관

TEL. 02-782-3380

FAX. 02-836-3380

E-mail
kohma@kohma.kr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안내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밀폐공간 작업 관심 급증
컨설팅을 통해 밀폐공간 장소 지정, 관리기준 등 운영현황 진단 및 미흡사항 개선으로 질식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KOSHA GUIDE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밀폐공간 관련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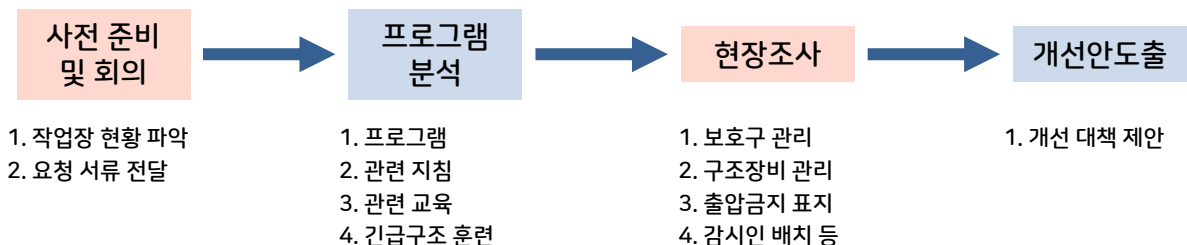
-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적정공기

구분	내용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주요 내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적정성 검토
- 안전보호구 및 장비 관리 적정성 검토
- 긴급구조 훈련 등 교육 훈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과 현장 일치 여부 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절차



국소배기 정밀진단 안내

정밀진단 목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이다. 국소배기장치는 적절한 후드모양과 충분한 제어속도가 확보되도록 설계·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운영 중에는 주기적인 검사/진단을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받아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국소배기장치의 사용 전 점검 국소배기장치의 월1회 이상 순회점검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리대상물질 49종(60m ³ /min, 송풍기용량), 기타 대상물질 및 분진설비 (150m ³ /min, 송풍기용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고시	유해물질 49종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국소배기장치 관리실태

구분	국소배기장치	적정제어속도	비율	
2016**사업	975	388	적합 42%	부적합 58%
광****학과	68	15	적합 22%	부적합 78%
P*****사	157	26	적합 17%	부적합 83%
일*****드	72	9	적합13%	부적합 87%

[성능미달 이유]

- 국소배기장치 설치초기부터 제어풍속이 부족하다.
국소배기장치의 적정 설계, 적정설치가 되도록 심사. 확인제도인 위해방지계획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대상이 한정적이고, 행정 간소화의 일환 등으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고, 설치 후에는 주기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설치 후, 사용 중 주기적인 진단 또는 검사의 기회가 적다.
유해물질 49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노출기준 50%미만에서는 제외되어 안전검사 대상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소배기장치 진단 필요성

-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작업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게 한다.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
- 자율진단형식의 국소배기진단으로 유해물질 노출위험이 있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평가, 개선방향수립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진단명령 등으로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제안의견

- 2024년도 보건사업계획에 반영하기기 바랍니다.
- 사업비용은 현장방문 상담 후 결정하겠습니다.

EHS 컨설팅 안내

컨설팅 목적

- 기업(기관) 및 협력사(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분야 감사(Audit)/컨설팅을 통한 EHS Risk 관리
-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 진행

컨설팅 진행단계



컨설팅 주요 내용

- 다양한 법률에 대한 Risk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정량적인 지표(평가 점수, 예상 과태료/벌금 등)를 활용한 종합보고서 제공
-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

컨설팅 강점(Strength)

-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EHS Checklist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컨설팅(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체 관리(감사) 진행 가능
- 효율적인 컨설팅 MD를 통한 비용 효과적인 컨설팅 가능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함)
- 2차 컨설팅 연계를 통한 부적합사항 개선조치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
-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 이상 급의 전문가 인력 (보건, 안전, 위험물, 고압가스, 화학물질 등)
- 다수의 기업체 컨설팅 경험 (수원 소재 반도체 대기업, 이천 소재 반도체 대기업 및 그 협력사 외 다수)

컨설팅 사례

구분	부서명	컨설팅계획	사진	컨설팅 결과
작업환경 개선/한제의 +TFT	외곽	(외주업체) 배수저장탱크 작업시 낙상 위험해결을 위한 난간 설치 필요		- 안전난간설치예정
작업환경 개선/한제의 +TFT	외곽	화학물질이 얼지러지는 상황에서 주변으로 확산방지하기위해 조치 필요(예 : 스티파레트)		- 스티파레트설치완료
작업환경 개선/한제의 +TFT	세정실	파우더 형태 세정작업의 환기장치 이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 - 근로자가 작업시 후드에 인접하여 작업 토록 작업관리 실시		- 이동식국소배기설치예정



[고용노동부 업무위탁기관]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기관
 보건진단기관

TEL. 02-782-3380

FAX. 02-836-3380

E-mail
 kohma@kohma.kr

